

보수규정 개정에 이견 없이 동의함

2016.1.25

케이티 노동조합

위원장 정 윤 모 (인)



【보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신설)	제20조의6(강직에 의한 조정) 인사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직된 직원의 기준연봉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승진에 따른 인상분만큼 감하여 강직 발령일부터 조정한다.	강직 신설 조문 변경
제20조의6(직책급)	제20조의7(직책급) <생략>	조문 변경
제27조(수당의 지급제한) 취업규칙에 의한 휴가일수가 월 7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대해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생략>	제27조(수당의 지급제한) 취업규칙에 의한 휴가일수가 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대해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생략>	초과근무수당 감액기준 완화
제29조(부문성과급) 부문성과급은 <u>본사, 사업부서, 지원부서</u> 의 최상위 <u>평가단위 조직인</u> 부문, 실, 본부(독립사업부서), 소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표5의1'의 차등폭을 적용하여 차등조정한 지급률에 의해 지급한다.	제29조(부문성과급) 부문성과급은 <u>사업부서, 지원부서</u> 의 최상위 <u>평가단위인</u> 부문, 실, 본부(독립사업부서), 소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표5의1'의 차등폭을 적용하여 차등조정한 지급률에 의해 지급한다.	용어 정리

현행	개정	비고
제29조의2(담당성과급) 담당성과급은 '별표5의1'의 기준에 의해 <u>본사, 사업부서, 지원부서의 중간 평가단위</u> 조직인 담당, 지사, 센터, 국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제29조의2(담당성과급) 담당성과급은 '별표5의1'의 기준에 의해 <u>사업부서, 지원부서의 중간 평가단위인</u> 담당, 지사, 센터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용어 정리

※ 부칙 (2016.XX.XX)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제20조의6은 2015.11.24일자로 시행한다.

【보수규정 별표 개정안 신규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별표1) 보수의 범위(Pay- Band)						(별표1) 보수의 범위(Pay- Band)						Pay - Band 하한 조정
1. G직/A직						1. G직/A직						
(단위 : 원)						(단위 : 원)						
구분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	구분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	
상한	33,640,830	41,266,080	51,582,610	58,030,440	69,636,530	상한	33,640,830	41,266,080	51,582,610	58,030,440	69,636,530	
하한	22,427,220	25,791,300	32,239,130	38,686,960	46,424,350	하한	22,832,820	26,196,900	32,644,730	39,092,560	46,829,950	
2. C직/Sales직						2. C직/Sales직						
(단위 : 원)						(단위 : 원)						
구분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	구분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	
상한	22,564,080	27,678,610	34,598,260	38,923,040	46,707,650	상한	22,564,080	27,678,610	34,598,260	38,923,040	46,707,650	
하한	15,042,720	17,299,130	21,623,910	25,948,690	31,138,430	하한	15,448,320	17,704,730	22,029,510	26,354,290	31,544,030	
(별표 4)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별표 4)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초과 근무 수당 인정 시간 확대
구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1. 초과근무수당	가. 상시일근자 : 기준연봉월정액 × 1.5/209 × <u>23시간</u> 나. 교대근무자 : 기준연봉월정액 × 1.5/209 × <u>(18시간+출근일수 18일 초과 1일당 1시간)</u>					1. 초과근무수당	가. 상시일근자 : 기준연봉월정액 × 1.5/209 × <u>24시간</u> 나. 교대근무자 : 기준연봉월정액 × 1.5/209 × <u>(19시간+출근일수 18일 초과 1일당 1시간)</u>					
2. 가산금	<생략>					2. 가산금	<생략>					